HANSHIN THE HUE

한신공영(주)

울산대공원 한신더휴
[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]

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
따라서,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당첨자 대상으로 정당계약 진행 시 필히 "전자수입인지"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 (미 지참 시 계약불가)

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계약금 납부
부동산 분양계약서	**계약체결일**	**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**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(분양대금+프리미엄)	

■ 세액

기재금액	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**150,000원**
10억원 초과	350,000원

■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 부과 (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, '21.01.01부터 적용)

기간	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[과소]납부 세액의 100%	무[과소]납부 세액의 200%	무[과소]납부 세액의 300%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

온라인 이용방법

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
또는 네이버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,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3 구매(납부정보 입력)

구분	내용
용도	인지세 납부
과세문서 종류	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금액	150,000원
건수	1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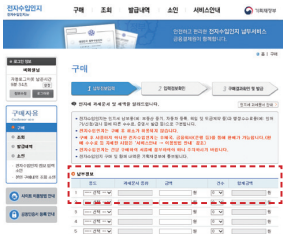

4 출력 ※ 출력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오프라인 이용방법

1 우체국·은행 방문(방문전 문의 요망)

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
3 전자수입인지 발급

시행위탁 (주) 마메종 시공 한신공영(주) 시행수탁 우리자산신탁